

정부·지자체 역량 모아...

'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' 만든다

- 12월 3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...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가이드 제공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한국부동산원(원장 손태락)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(담당자 600여명)를 대상으로 12월 3일(세종)·4일(대구)·9일(서울)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.

○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『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』(한국부동산원 위탁)를 두고, 부동산 불법행위* 신고를 접수·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(행정처분, 수사의뢰 등)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.

* 공인중개사법 42개(집값담합, 자격증 대여, 무등록중개, 거짓언행,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), 부동산거래신고법 8개(거짓 신고, 거짓신고 방조, 거래(해제)신고 의무위반 등)



○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,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-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,

-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, 행정처분 등 조치,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,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,

* (사례1)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 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 ☞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벌금형 (사례2)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금액의 실거래신고 ☞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

○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,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*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.

* 신고 유형 및 필수 서류 등 안내 문구를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, 신고서 서식에 신고 유형 선택, 첨부서류 체크 박스 등 기능 개선 추진

□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‘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(www.budongsan24.kr)’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, 최근에는 국세청의 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’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“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며,

○ “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책임자	단 장	김명준	(044-201-3589)
		담당자	사무관	안유나	(044-201-3631)
			주무관	고은정	(044-201-3592)
<교란행위 신고>	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	책임자	처 장	윤종돈	(053-663-8760)
		담당자	부 장	김병수	(053-663-8765)
<표시·광고 모니터링>	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	책임자	센터장	박상용	(02-6263-3711)
		담당자	팀 장	유현지	(02-6263-3712)

참고 1

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개요

- (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) ①부동산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와 ②인터넷을 통한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센터로 구성
 - 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) 무등록·무자격 중개 행위, 집값 담합,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등 신고·접수
 - (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) 인터넷을 통한 중개대상물 허위·과장 광고, 명시의무(소재지·관리비·가격 등 미기재) 위반 등 신고·접수
 - (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) 부동산 거래과정(취득, 보유, 양도 등)에서 발생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행위 신고·접수

□ 대문 페이지

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

무엇을 신고하고 싶으신가요?

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

집값담합, 시세교란, 무등록중개, 업다운 계약신고 등



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


국토교통부

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·광고

명시의무, 부당한 표시·광고, 광고주체 위반 등



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


국토교통부

부동산 탈세행위

부동산 취득, 보유, 양도 과정의 탈세 등



부동산 탈세 신고센터


국세청

통합 콜센터 1644-9782

(구출발21)

1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

2번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·광고

인터넷 홈페이지

* 국토부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선('25.11)

참고 2

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위법행위 사례

사례 1

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
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

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법원의 벌금형



사례 2

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금액의 실거래신고

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

